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 11. 23.(금) 10:00】

#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보 건 · 복 지 위 원 회

#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년 11월 23일  
전문위원 김 동 영

## 1.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 2. 제출근거(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 얻고자 함.

## 3. 검토의견

### 가.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 기 금 명              | 2019년도말<br>조성액 | 2018년도말<br>조성액 | 비교증감    | 증감률<br>(%) |
|--------------------|----------------|----------------|---------|------------|
| 합 계                | 5,748,599      | 5,825,598      | △76,999 | △1.32      |
| 자활기금               | 2,674,088      | 2,653,088      | 21,000  | 0.79       |
| 양성평등기금             | 1,304,353      | 1,378,853      | △74,500 | △5.40      |
| 어르신복지기금            | 1,081,419      | 1,115,566      | △34,147 | △3.06      |
| 폐기물처리시설<br>설치기금    | 30,731         | 1              | 30,730  | 3,073,000  |
| 환경미화원자녀<br>학자금대여기금 | 658,008        | 678,090        | △20,082 | △2.96      |

※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제외

(자활기금 158,000천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82,220천원)

-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5개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32%(7,699만 9천원) 감소한 57억 4,859만 9천원이며,
  - 자활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2개 기금은 전년도 대비 조성액이 증가하고,
  -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3개 기금은 전년도 대비 조성액이 감소함.

나. 기금운용(수입·지출)계획

(단위 : 천원)

| 기금명                           | 수입      |           | 지출        |           |
|-------------------------------|---------|-----------|-----------|-----------|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 합계      | 2,855,088 | 합계        | 2,855,088 |
| 자활기금<br>(생활보장과)               | · 융자금회수 | 32,000    | · 비용자성사업비 | 81,000    |
|                               | · 예치금회수 | 2,653,088 | · 융자성사업비  | 100,000   |
|                               | · 이자수입  | 50,000    | · 예치금     | 2,674,088 |
|                               | · 기타수입  | 120,000   |           |           |
|                               | 합계      | 2,855,088 |           |           |
| 양성평등기금<br>(여성가족과)             | 합계      | 1,404,353 | 합계        | 1,404,353 |
|                               | · 예치금회수 | 1,378,853 | · 비용자성사업비 | 100,000   |
|                               | · 이자수입  | 25,500    | · 예치금     | 1,304,353 |
| 어르신복지기금<br>(어르신복지과)           | 합계      | 1,136,419 | 합계        | 1,136,419 |
|                               | · 예치금회수 | 1,115,566 | · 비용자성사업비 | 55,000    |
|                               | · 이자수입  | 20,853    | · 예치금     | 1,081,419 |
| 폐기물처리시설<br>설치기금<br>(청소자원과)    | 합계      | 30,731    | 합계        | 30,731    |
|                               | · 예치금회수 | 1         | · 예치금     | 30,731    |
|                               | · 이자수입  | 30,730    |           |           |
| 환경미화원자녀<br>학자금대여기금<br>(청소자원과) | 합계      | 702,808   | 합계        | 702,808   |
|                               | · 융자금회수 | 12,765    | · 융자성사업비  | 44,800    |
|                               | · 예치금회수 | 678,090   | · 예치금     | 658,008   |
|                               | · 이자수입  | 11,953    |           |           |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26억 5,650만 5천원) 대비 7.48% (1억 9,858만 3천원) 증가한 28억 5,508만 8천원을 운용할 계획임.
  
-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2001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이 명칭을 변경한 것임.
  -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14억 2,834만원) 대비 1.68% (2,398만 7천원) 감소한 14억 435만 3천원을 운용할 계획임.
  
-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11억 5,554만 1천원) 대비 1.65% (1,912만 2천원) 감소한 11억 3,641만 9천원을 운용할 계획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338억 8,993만 7천원) 대비 99.91% (338억 5,920만 6천원) 감소한 3,073만 1천원을 운용할 계획임.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6억 7,426만 7천원) 대비 4.23% (2,854만 1천원) 증가한 7억 280만 8천원을 운용할 계획임.

#### 다. 종합의견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sup>1)</sup>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sup>1)</sup>에 재원 조달의 안정성과 운용의 탄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개별 법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sup>1)</sup>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우리구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sup>2)</sup>에 따라 제출된 “2018년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의 기금별 사업운영 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참고하는 한편, 기금도 예산의 일부인 만큼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2)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 [붙임]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1, 2011.11.3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5.21, 2011.11.30, 2015.11.4)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서울특별시 또는 강서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삭제(2015.11.4)
7. 다른 기금의 출연금(신설 2009.5.21)
8.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신설 2009.5.2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30, 2015.1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1.11.30, 2015.11.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개정 2015.11.4)
4. 삭제(2015.11.4)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11.11.30, 2015.11.4)
  - 가. 자활근로 참가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 나.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필요한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개정 2015.11.4)
-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개정 2015.11.4)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신설 2009.5.21)
8.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신설 2009.5.21)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신설 2009.5.21)
10. 자활사업실시기관 임대보증금 대여(신설 2011.11.30, 개정 2015.11.4)
11.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신설 2011.11.30, 개정 2015.11.4)
12. 삭제(2015.11.4)
13.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기능보장 사업비 등 지원(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정한다)(신설 2015.11.4)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09.5.21, 2011.11.30)
-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활사업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자활사업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6.11.14, 2009.5.21, 2011.11.30)
- ③ 기금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 ④ 구청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11.4)
-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1.11.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및 결산
2.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11.30)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주요사항(개정 2011.11.30)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5.11.4)

제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4)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11.30)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0)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9.5.21, 2011.11.30, 2015.11.4)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5.11.4)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를 채용한 기업(신설 2009.5.21)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가 제3조에 따른 기금을 지

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0)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30)

제9조(대출의 범위) ① 삭제(2015.11.4)

② 제7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11.4)

③ 제7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대출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조성을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한다(신설 2009.5.21, 개정 2015.11.4)

④ 제7조제6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대출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한 기업의 사업자금으로 한다.(신설 2009.5.21)

제10조(대출 및 상환) ① 삭제(2015.11.4)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개정 2015.11.4)

③ 제9조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대출은 시설 및 기관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신설 2009.5.21, 개정 2015.11.4)

④ 제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 채용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신설 2009.5.21)

⑤ 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른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연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2015.11.4)

⑥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대출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씩 균등상환한다.(개정 2009.5.21, 2015.11.4)

제11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1.30)

제12조(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저소득주민 또는 자활기업은 대출금 상환 이전에 같은 또는 다른 용도로 재차 대출할 수 없다.(개정 2011.11.30, 2015.11.4)

제13조(대출금의 반환)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받은 저소득주민 또는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2011.11.30, 2015.11.4)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1.30)
3.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1.11.30)
4. 대출을 받은 자가 강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제14조(이자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제5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이율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9.5.21, 2011.11.30, 2015.1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4)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4)

제15조(신용보증비용) 제3조제6호에 따른 신용보중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1.11.30)

제16조(준용) ① 기금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11.30, 2014.12.24.)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

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및 기본 시책

### 제1절 양성평등 시행 계획 및 추진체계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

로 하고,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양성평등, 가족·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17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일·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2조(성차별 금지)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의 자립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 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및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26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장애인 가족·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8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관내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양성평등의 구현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나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2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분석평가의 시기·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

하는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 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37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38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42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제2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4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중은행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사용은 기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

제4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성과 분석을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8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양성평등위원회가 제1항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를 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0조부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결산심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46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장 보 칙

제4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2.12.31, 2017. 8. 2.)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7. 8. 2.)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12.3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어르신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개정 2012.12.31, 2017. 8. 2.)

1. 어르신복지 관련단체 지원
2.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 지원
3. 어르신의 사회봉사활동사업 지원
4. 어르신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사업 지원
5. 어르신공동작업장 운영지원
6. 어르신문제 상담소 운영지원
7. 그 밖의 어르신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7. 8. 2.)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8. 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어르신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1998.10. 7, 2006.11.14, 2011. 9.27, 2017. 8. 2.)

1. (개정 2009.10.20, 2011. 9.27, 2012.12.31, 삭제 2017. 8. 2.)

2. (개정 2012.12.31, 삭제 2017. 8. 2.)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어르신복지업무 담당과장, 건강관리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7. 8. 2.)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신설 2017. 8. 2.)

2. 어르신복지 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장(신설 2017. 8. 2.)

3. 어르신복지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신설 2017. 8. 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7. 8. 2.)

⑥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10. 7, 2012.12.31, 2017. 8. 2.)

⑥ (신설 2012.12.31, 삭제 2017. 8. 2.)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 8. 2.)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신설 2017. 8. 2.)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신설 2017. 8. 2.)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17. 8. 2.)

4. 그 밖에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신설 2017. 8. 2.)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

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7. 8. 2.)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7. 8. 2.)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2.)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신설 2017. 8. 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2.31)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그 밖의 어르신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2.12.31, 2017. 8. 2.)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2.)

제7조의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8. 2.)

제8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7. 8. 2.)

② 기금운용관은 어르신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어르신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8.10. 7, 2006.11.14, 2011. 9.27, 2012.12.31, 2017. 8. 2.)

③ 「지방회계법」상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12.31, 2016.9.28, 개정 2017.9.28.)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00. 5.16, 2012.12.31, 2017. 8. 2.)

② 구청장은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2.3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8. 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8. 2.)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2017. 8. 2.)
3. “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2장 납부금액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상가 등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4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산정

가. 소각시설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 산정

가. 소각시설 : 소각시설별 부지소요 면적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440제곱미터/톤을 곱한 면적

###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 제곱미터당 매입단가 산정

가.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 평균가

나.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택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가

###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 산정

가. 소각시설 :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3호에 따른 부지 매입단가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3호에 따른 부지 매입단가를 곱한 금액

###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산정

가.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

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③ 감정평가 등 비용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4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한 후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15일간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개정 2017. 8. 2.)

제6조(분할납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 제3장 기금의 설치 등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과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9.28, 개정 2017.9.28.)

제13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과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나.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다. 환경분야에 단체활동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8. 2.)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8. 2.)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제18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신설 2017. 8. 2.)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구성) ①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2.28.)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신설 2016.12.28.)

제4조(기금회계직무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15)

② 기금의 회계직무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 4.15, 2016.9.28, 개정 2017.9.28.)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6.12.28.)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2016.12.28.)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6.12.28.)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원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